

회 칙

대한응급의학회 강원지회

제정: 2016년 3월 29일

제1장 총칙

제 1 조(명칭)

본 회의 명칭은 '대한응급의학회 강원지회'라 한다

제 2 조(목적)

본 회의는 강원도 및 인접지역 응급의학 전문의, 전공의 및 응급의료관련 종사자의 학술교류, 교육, 연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며, 다음 각호의 목적을 가진다.

- 1) 응급의학 발전을 위한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
- 2)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
- 3) 지역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
- 4)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
- 5) 기타 응급의료와 관련된 사항

제 3 조 (사무소) 본 회의 사무소는 강원도에 둔다.

제2장 회원

제 4 조(회원의 자격 및 입회)

- 1) 정회원: 강원도 및 강원 인접 지역에 근무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
- 2) 특별회원: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의사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
- 3) 준회원: 강원도 및 강원 인접 지역의 응급의학과 전공의,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

제 5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본회의 각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.

- 1) 정회원
 - ① 본 회의 집담회에 참석하고, 총회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
 - ② 본 회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 - ③ 본 회의 회장단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 - ④ 본 회의 입회비,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, 부담금의 항목과 액수는 회장단에서 정한다.
- 2) 준회원
 - 본 회의 집담회에 참석할 수 있다.
- 3) 특별회원
 - ① 본 회의 총회 및 집담회에 참석할 수 있다.
 - ② 본 회의 발전과 연구를 위하여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러 제언을 할 수 있다.

제 6 조(회원의 자격 정지)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의 정지 또는 상실한다.

- ①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총회에서 참석한 정회원 중 2/3 이상으로 자격상실 결의가 확정된 경우
- ② 본 회로부터 부여된 업무의 비성실 이행 등

제3장 운영진 및 조직

제 7 조(운영진의 구분)

본 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- ① 회장: 1 명
- ② 총무: 1 명
- ③ 감사: 1 명

제 8 조(운영진의 의무)

-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의 사업(제 3 조)을 주관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총무는 본 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
제 9 조(운영진의 선출)

- ① 회장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투표로 최다수 획득자로 정한다.
- ② 총무와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10 조(운영진의 임기)

- 1) 회장: 임기는 2 년 이며 1 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- 2) 총무: 임기는 2 년이며 중임 할 수 있다.
- 3) 감사의 임기는 2 년이며 중임 할 수 있다.
- 4)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궐로 선임되는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장 회의

제 11 조(총회 및 학술회의)

1) 정기 총회: 매년 1 회 실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운영진 선출에 관한 사항
- ②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
-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④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
- ⑤ 기타 중요한 사항

2) 정기 총회의 의결 방법

본회의 총회 의결 사항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, 회칙 개정, 회원 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의 의결은 정회원 2/3 이상으로 한다. 총회 의결 방법은 각 정회원이 출석, 서면, e-메일로 찬반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. 출석 이외의 방법으로 찬반 의사를 표명할 때에는 투표 마감일로부터 최소 3 일 이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이 총무에게 전달되어야 한다.

인터넷 투표의 경우 회장은 투표 마감일 최소 2 주 이전에 정회원에게 e-메일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.

3) 임시총회

임시총회는 본 회의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 또한 회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회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제5장 재정

제 12 조(회계)

- 1) 본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들의 연회비 및 찬조금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- 2) 본 회의 입회비는 회장단에서 의결한다
- 3)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.
- 4) 본 회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 년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한다.
- 5) 본 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부칙

제 1 조

- 1) 본 회의 회칙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